

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

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4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9.

발의자 : 의장

1. 주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와 「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 제2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.
-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2. 제안 이유

-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,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.

나. 이에 사전·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, 남양주시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과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 남양주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(안)

구 분	성 명	비 고
계	7명	
자 치 행 정 위 원 회	김 지 훈(민) 원 주 영	
복 지 환 경 위 원 회	박 윤 옥 한 송 연	
도 시 교 통 위 원 회	박 경 원 김 동 훈 이 진 환	

5. 참고 사항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
나. 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

다. 「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 제2조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2. 5. 12.>

② <개정 2018.10.25.><삭제 2022.09.19.>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6.11.28.>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<개정 2022. 5. 12.>

□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<개정 2017. 2. 23.>